

[별표 1의2]

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기준(제5조의2제1항 관련)

- 1 신청 당시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을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등록 시점에 확보가능할 것
- 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보유할 것
3.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(backup)장치를 구비할 것
4.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
5. 전산자료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
6.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,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